

2019 6월

동물학대대응포럼



01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동물학대 대응체계

02 동물학대 사례로 보는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

03 마무리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동물학대 대응체계

동물자유연대 박선화 선임활동가

2017년 온몸에 구타 흔적과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된 푸들 미지

아동과 동물

■ 아동

성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육법상 **만 6~12세**까지 초등학교 의무교육 학령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가 아닌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적 존재**

■ 아동 그리고 동물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쉽지 않은 존재,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대상이 됐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동과 동물이 가지는 유사한 사회적 위치 및 특수성

우리 사회는 아동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살펴봄으로써 아동과 같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재인 동물에 대한 학대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예방·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아동권리

UN 아동권리협약(1989년 채택, 1991년 한국 비준), 아동복지법 제 2조

■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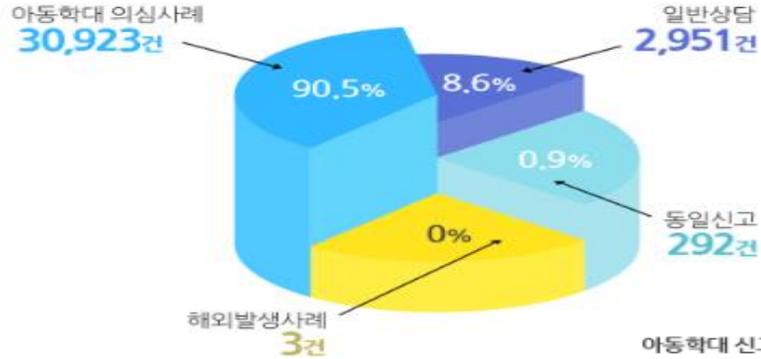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적극적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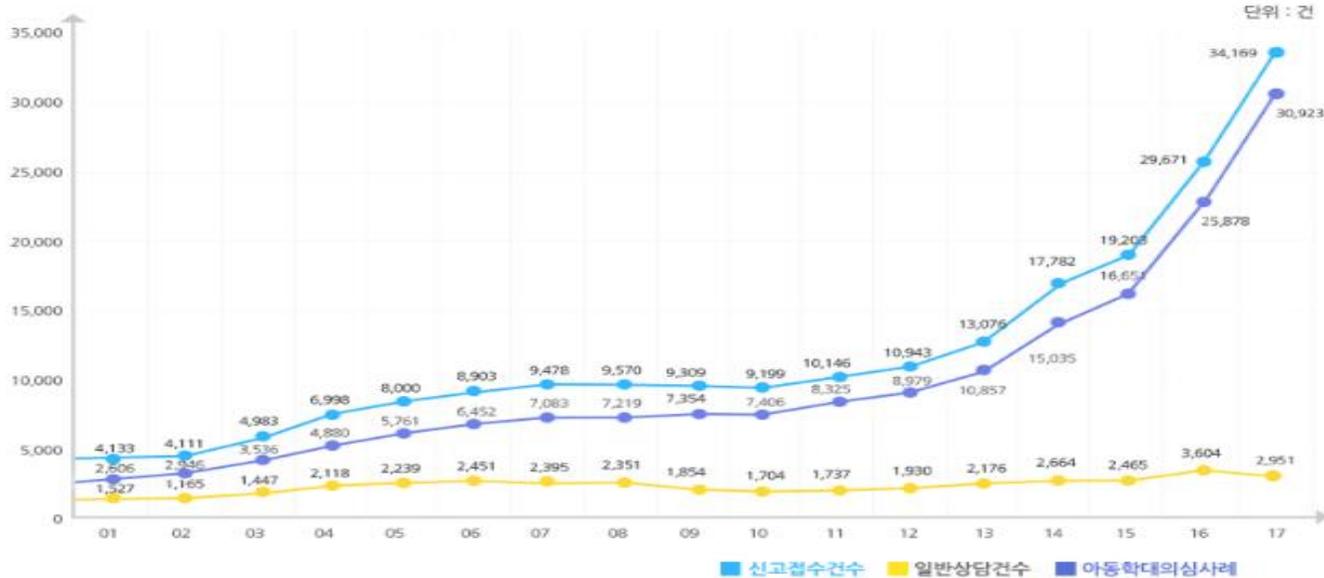
- 0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학대 행위의 예시와 그에 따른 신체적 징후도 명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 02 개인, 가족, 사회 단위에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 (정신장애, 학대경험, 빈곤, 가정 폭력,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분석
- 03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제공**

아동학대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신고접수현황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아동학대 관련법 및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있다!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교육 미시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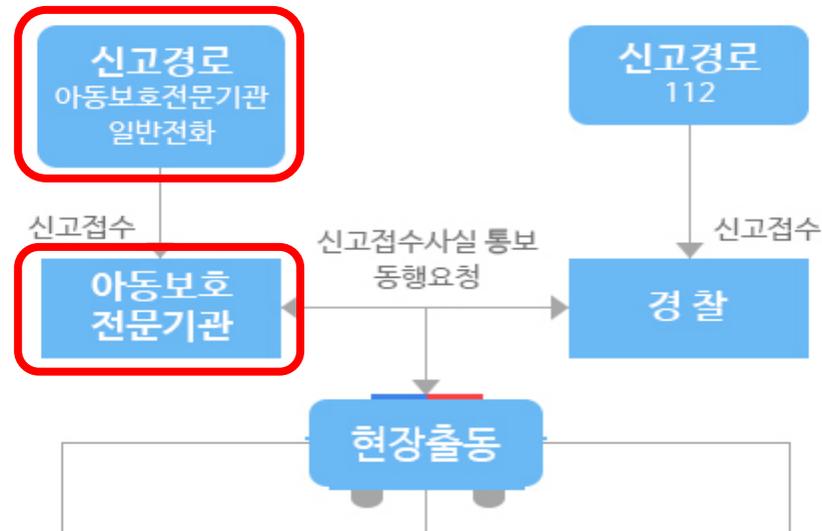
■ 아동학대 관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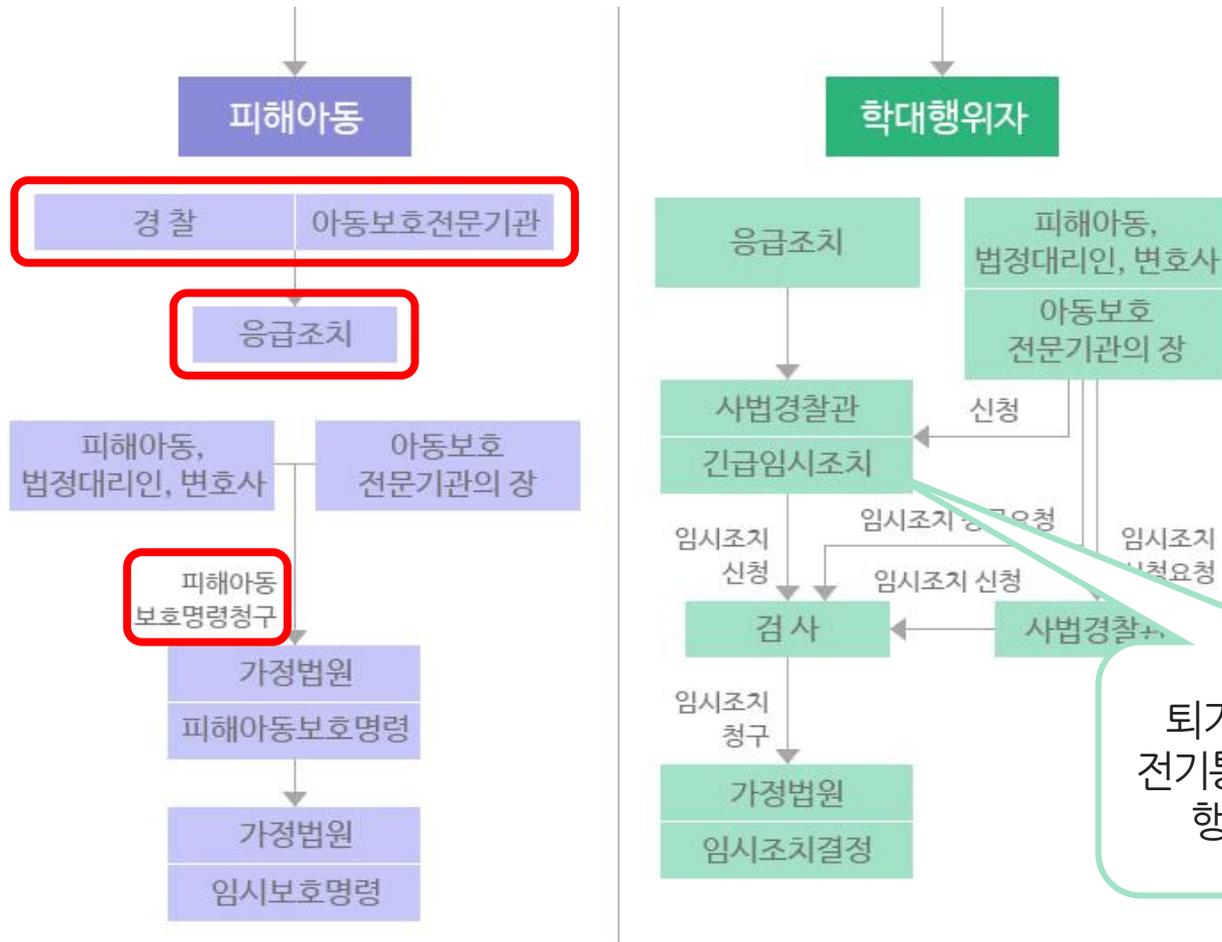
아동복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보호심판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아동학대 대응체계 뜯어보기

■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 및 57개소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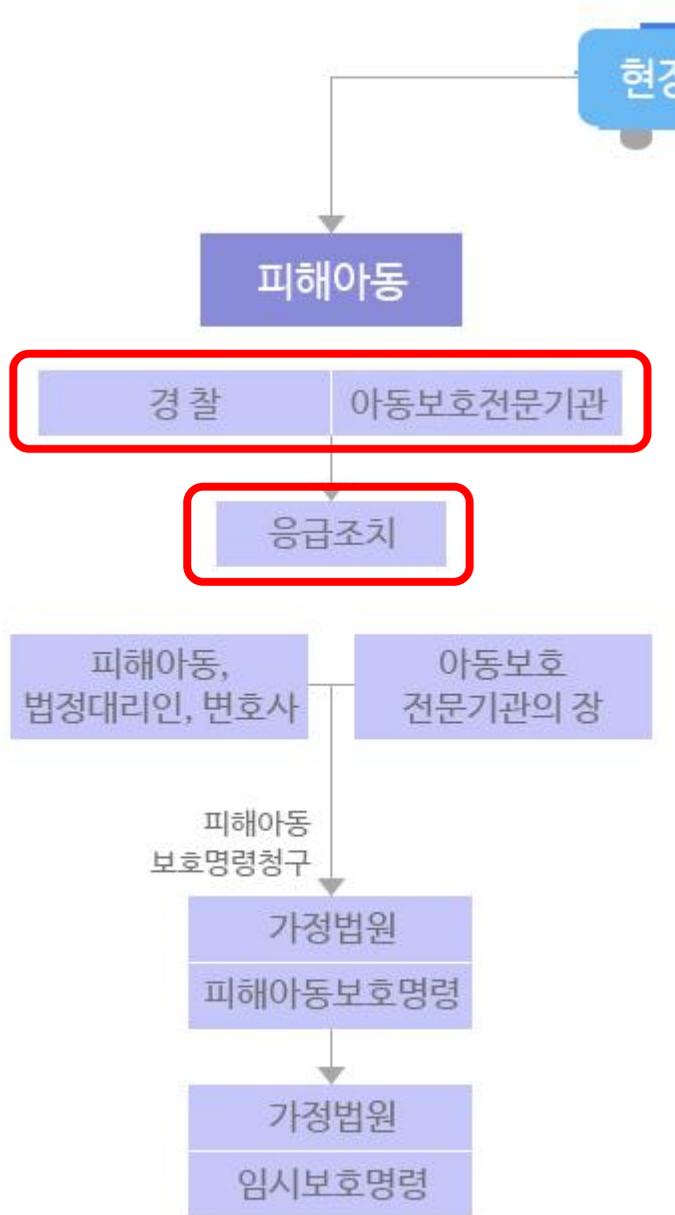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을 수행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응급조치 및 보호는 필수적 요소!
학대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포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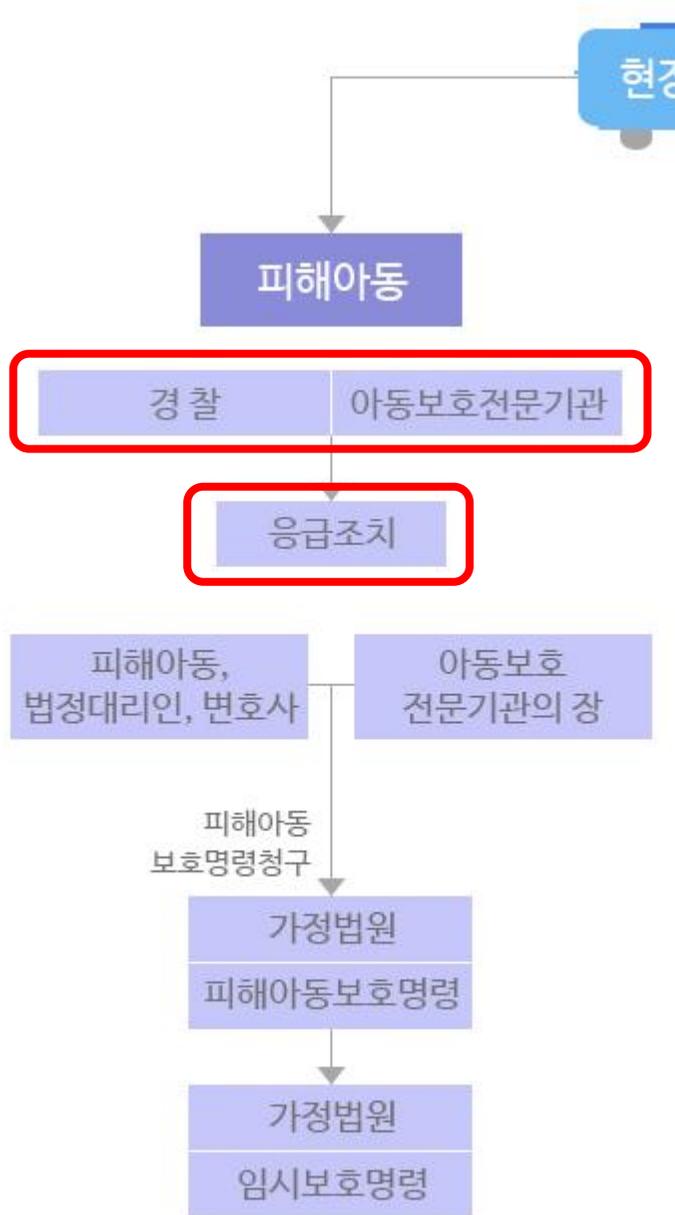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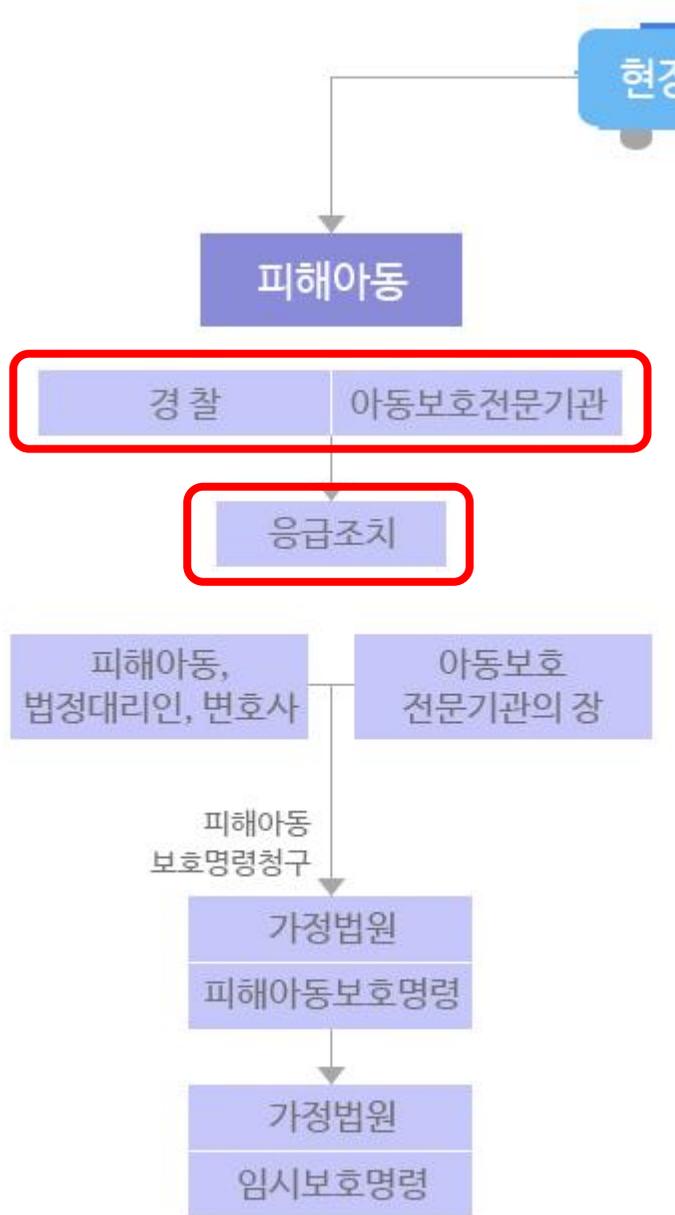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제4항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위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 까지 연장됨



■ 보호조치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 보호대상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시키는 것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

■ 아동학대는 복합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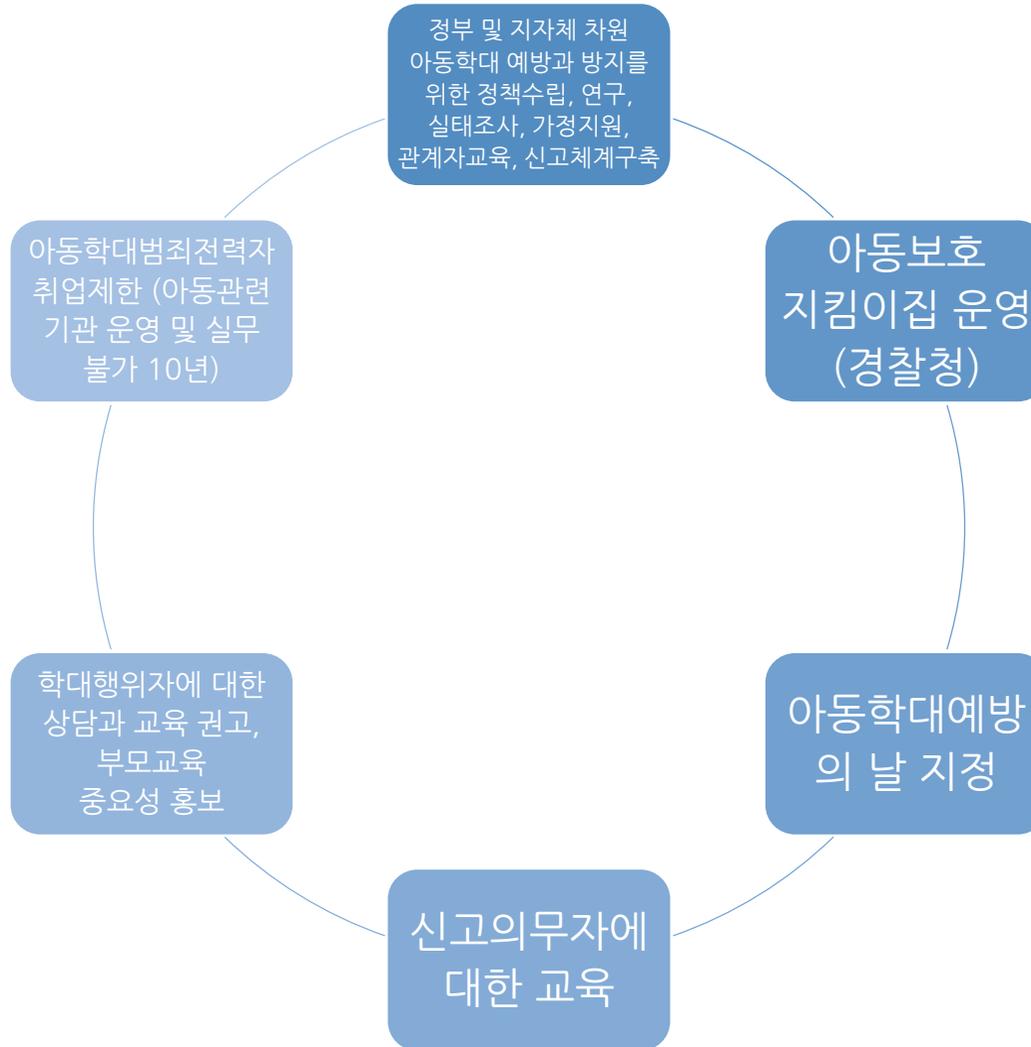
전문 상담가와 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과 집단에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아동학대는 문제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 라는 인식**

- 상담치료
- 빈곤 해결을 위한 일자리 지원
-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치료
- 지역사회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연계
- 자원봉사자 파견 가사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조치 후 반드시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 다양한 지원 후 아동의 심리적 안정, 개입 목표 달성 체크, 위험성 감소, 아동과 가족의 욕구충족 여부 평가를 진행해 학대 상황이 추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결과 도출하면 종결
- 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은 장기 격리 될 수 있음

아동학대, 사회적 인식과 안전망 구축



어디서나 아동학대를 감시하는 매의 눈, 시민



['5세아동 골절상 방치' 키즈어학원 교사 징역형 징유 확정](#)

연합뉴스 | 1일 전 | 네이버뉴스 |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2월 당시 5세인...

- ↳ [대법, 다친 아동 발로 차고 방치한 어...](#) 아시아경제 | 1일 전 | 네이버뉴스
- ↳ [대법, 골절상 입은 아동 발로 차고 방...](#) 아시아투데이 | 1일 전
- ↳ ['5살 아동 전치 4주 골절상 방치' 어...](#) 서울경제 | 1일 전 | 네이버뉴스



[가냘픈 몸에 상처투성이...부모 모두 아동학대로 처벌 전력](#)

연합뉴스 | 2019.01.03. | 네이버뉴스 | [↗](#)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C씨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열악한 가정환경 상태를 확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받아낸 뒤 의정부시에 **아동** 보호시설 입소를...

- ↳ [화장실 체벌 사망 여아, 1년간 보호...](#) KBS | 2019.01.03. | 네이버뉴스
- ↳ [벌 서다 숨진 4살 여아 오랜 기간 학...](#) 서울신문 | 2019.01.03. | 네이버뉴스
- ↳ [숨진 4살 어린이 가냘픈 몸에 상처투...](#) 경기일보 | 2019.01.03.



[7개월 딸 방치 숨지게 한 부모 檢 송치...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뉴스1 | 2019.06.14. | 네이버뉴스 | [↗](#)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7일 오전 8시22분께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도 모두 거짓이라고 시인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당시 잠시 친구에게 아기를 맡겼고, 친구가..."



['뭉기고 때리고'...꽃이지 않는 아동학대](#)

YTN PICK | 2019.06.15. | 네이버뉴스 | [↗](#)

이처럼 부모의 학대로 목숨까지 잃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실태를 나혜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살 아빠와 18살 엄마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엿새 동안 집 안에 홀로 내버려뒀습니다. 뒤늦게 아기가 숨진 걸...

아동학대, 그러면 동물학대는...

- 아동의 권리 명시, **법으로 명시하되** 학대의 범위 ·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 다수의 관련법과 그에 기반한 학대아동 보호조치 및 학대자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집행, 최근 학대보호아동 귀가조치 권한은 지자체장만 갖는 것으로 결정
- **신고 의무자의 존재**
- 경찰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정하는 **전국 6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가능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신고현장에 출입** 가능
-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긴급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
- 정부,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진행**
- 긴급전화 설치
- 아동학대 문제 해결은 **평가 - 종결 - 사후관리**까지!
- 아동보호지킴이집 운영,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하여 **아동학대 인지 제고 노력**
-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실무 불가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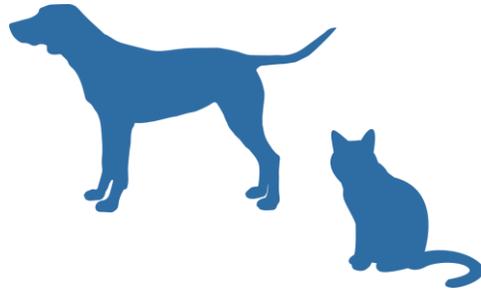


동물학대 사례로 보는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

동물자유연대 구철민 선임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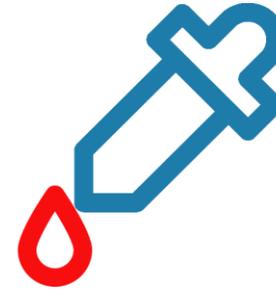
지난 추석 연휴 보호자에게 학대 당해
탈진 상태로 발견된 5개월령 보담이

2018년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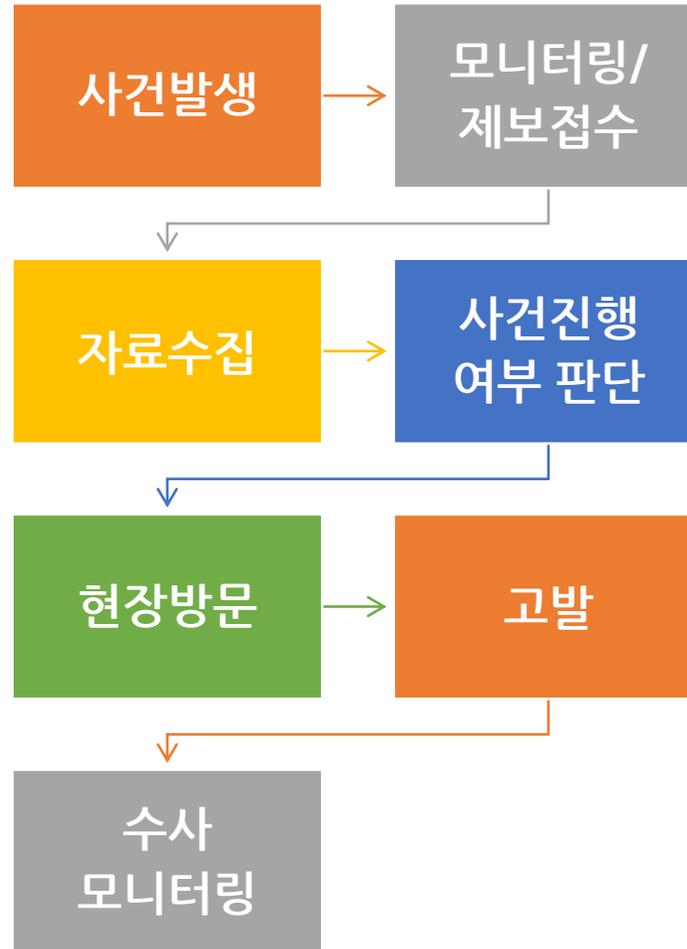
방치
326건

열악한 사육환경 제외
(포함 시 약 800건)



학대
218건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사건 프로세스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강남구 역삼동 세입자 개 방치 사건 (직무 수행 준비 부족 사례)



개 2마리를 키우는 세입자 1주일간
연락두절

옥상에서 힘없이 배회하는 개 1마리,
구석에서 움직임 없는 개 1마리 발견

강남구청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연락

이미 상황 인지 상태지만 무단침입 할
수 없다고 민원 묵살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강남구 역삼동 세입자 개 방치 사건 (직무 수행 준비 부족 사례)



동물보호담당관의 책임과 의무를 주지
시키며 현장 점검 요청

“가볼 것이나 오늘은 서류 작업을 해야
하니 내일 가겠다” 답변

동물보호담당관의 권한과 의무를 인지
못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
도 극히 낮음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 직무 수행 준비 부족에 대한 개선점

- 01 전임자와 인계인수 강화
- 02 직무 교육 강화 및 주기적 시행
- 03 주기적 직무 수행 능력 점검을 통한 엄정한 상벌
- 04 동물 감수성을 지닌 담당관 배정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대구 반야월 할배 사건(소극 행정 사례)



대구에서 극히 열악한 환경에
개를 방치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제보 접수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대구 반야월 할배 사건(소극 행정 사례)



대구 동구청 동물보호담당관에게 현장 점검 요청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대구 반야월 할배 사건(소극 행정 사례)



동물보호법상 적절치 못한 환경으로 인한 고통, 상해를 학대로 규정

목줄로 인해 부상 입은 개가 있음을 확인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요청

“경찰 등이 학대로 판단해야 보호 조치 하겠다” 답변

학대 판단 기준은? - 검찰의 기소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평택 주택가 불법번식장 (소극 행정 사례)



주택가 장모치와와종 불법 생산업자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평택 주택가 불법번식장 (소극 행정 사례)



60여 마리가 주택 안 격리 없이 이어진
한 공간에 살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옴, 피부병이 매우 심각한 상태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평택 주택가 불법번식장 (소극 행정 사례)



동물보호담당관의 현장 출동 요청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요청

학대자 확인(동의)을 받고 하겠다는 입장

결국, 동물보호담당관의 도움없이
민간 구조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지자체

■ 소극 행정에 대한 개선점

- 01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담당관의 권한과 의무 명시
- 02 적극 행정 면책 활성화 및 공무원 대상 홍보
- 03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에 대한 엄정한 상벌
- 04 동물 감수성을 지닌 담당관 배정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경찰

경북 상주 오토바이 개끌이



개를 끌고 가는 오토바이 발견한
제보자 경찰 신고

개는 발에 피를 흘리던 상태

경찰의 동물학대 인식 부족으로
무면허에 대한 조치만 하고 훈방

동물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경찰

경기 안산 고양이 방치 아사 사건



세입자와 3개월 간 연락두절

악취로 인해 집 주인이 문을 개방

집 내부 고양이 사체 여러 마리와
아직 살아있는 고양이 1마리 발견

현장 확인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은 조치 없이 귀가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경찰

경기 안산 고양이 방치 아사 사건



“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어서 혐의
점이 없어 그냥 왔다 ” 답변

동물학대사건을 목격하고도 조치
없이 지나친 점 항의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알리
고 보호조치 요청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경찰

경기 인천 개 방치 아사 사건



세입자의 반려견 방치

집 주인이 경찰과 함께 문을 개방

뼈만 앙상한 백구 1마리와 이미
죽은 푸들 발견

경찰관은 동물학대사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귀가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경찰

■ 개선점

- 01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경찰 통계 확인 불가
- 02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은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일’
이라는 경찰 인식 ▶ 소극 행정으로 연결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동물보호법의 한계

신체적 고통 - 사육/관리 의무 위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8. 9. 21.>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땅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
 -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마.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동물보호법의 한계

신체적 고통 - 사육/관리 의무 위반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다.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마.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학대대응 사례로 살펴보는 한계 및 개선점 - 동물보호법의 한계

신체적 고통 - 흑한/흑서 방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우04714)

전화 : 02-2292-6337 팩스 : 02-2292-6339 이메일 : admin@animals.or.kr